

영상그래픽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영상그래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의 목적) 연구소는 전문연구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상그래픽 기술 개발 및 학술활동을 위해 산학연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그래픽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조사
2. 영상그래픽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3. 영상그래픽 제작기술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연구
4. 영상그래픽에 관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 타 대학 교류,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5. 국내·외 관련 기관의 학술교류 및 협동연구
6. 외부기관과의 위촉에 의한 전문연구 및 자문
7.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자문위원 및 간사를 둔다.

②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소장 1인
2. 간사 1인
3. 자문위원
4. 연구위원 약간인

③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간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분과장) ① 각 분과에 분과장을 두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② 분과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사임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은 전임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전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객원연구위원은 영상그래픽분야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은 조사·연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계의 권위 있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 및 연구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 수립

3. 연구업무의 관리
4. 조교 및 연구보조원 임명
5. 업무 조정
6. 연구소 규정 개정
7. 기타 중요사항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위탁사업 기금과 국내외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총당한다.

제10조(회계)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본교 회계연도 준한다.

제11조(준용)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0.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